

[별표 3]

보조금 지원범위(제11조제1항 관련)

□ 투자보조금(입지·설비), 이전보조금

○ 투자사업장의 주업종과 지역에 따른 기본지원비율 및 국비 보조비율

		수도권	수도권 인접지역	일반지역	지원우대지역	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	
기본 지원 비율	일반업종	우대, 첨단, 공급망핵심, 협력형복귀, 국가전략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기업	-	21%	24%	34%	44%
	우대업종	-주력산업 -지역특성화업종 -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(투자사업장이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) -구조고도화산업단지 입주 기업 -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-여성기업	-	23%	26%	36%	46%
	첨단업종	-첨단업종	11%	44%	47%	48%	49%
	공급망핵심업종	-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분야 업종					
	국가전략기술	-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	26%	45%	48%	49%	50%
	첨단전략기술	-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					
	국비분담(국비:지방비)		40:60	45:55	65:35	75:25	80:20

- ※ 우대업종 중 지역별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본 지원비율에서 +3%p 가산하여 지원 가능
- ※ 투자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업종, 공급망 핵심업종, 국가전략기술 분야,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비보조비율은 지원우대지역에 준하여 적용
- ※ 동반복귀기업과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지원비율에서 +5%p 가산하여 지원 가능
- ※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」 제5조제5호에 따른 관세피해기업으로서 2025년 4월 2일 이후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위 표에서 정한 기본지원비율의 10%를 가산하여 지원 가능